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일신네이처(김재학)

나. 전화번호 : 02-473-4527

2. 명칭 :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활용한 수평흐름식 초기우수 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로프형 섬유여재가 적용된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 구조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초기우수 내 고형물을 제거하는 기술로 고형물 부하량을 향상시키고 설치부지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임. 또한, 상향류식 공기역세방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여과·역세척·배수 등 일련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후속 강우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술이다.

<범위>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으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술, 하부 산기장치를 통해 여과체 내 누적된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향류식 공기역세척기술, 수위 계측값을 이용한 전체 공정의 자동제어기술을 포함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부건설(주)(이중길), ② 양우건설(주)(고삼상), ③ (주)한라(박철홍), ④ (주)한국건설공법(황기수)

나. 전화번호 : ① 02-3484-2114, ② 02-2679-5200, ③ 02-3434-5871, ④ 02-417-8407

2. 명칭 :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스토퍼파일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건축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회전 가능한 스톱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기초의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하게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톱퍼가 그 자중에 의해 수평 상태로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됨으로써, 정착판 설치를 위한 기존 기초의 상부면 파쇄 공정과 단면 복구 공정이 생략되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향상되고, 얇은 기초에서도 전단에 대한 구조성능이 확보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이다.

<범위>

기존 기초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한 상태로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톱퍼가 그 자중에 의해 수평상태로 자동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세청공고제2019-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하되, 35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35명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35명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